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은 다음 아래와 같이 재산세·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취득세의 경우 2023.1.1.부터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다음 아래와 같이 재산세·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취득세의 경우 2023.1.1.부터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시행(「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9조제1항)
21	<p>6) 운영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p>6) 운영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p>* 어린이집의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인가 시 현행 설치기준 적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육정원 감원과는 별개의 사항임</p>
35	<p>■ 기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p>■ 기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배치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018. 6. 13.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 안전성능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018. 6. 13.부터 시행)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6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반편성</th> <th>출생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4. 1. 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3. 1. 1. ~ '23.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2. 1. 1. ~ '22. 12. 31.</td> </tr> <tr> <td>3세반</td> <td>'21. 1. 1. ~ '21. 12. 31.</td> </tr> <tr> <td>4세반</td> <td>'20. 1. 1. ~ '20.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9. 1. 1. ~ '19. 12. 31.</td> </tr> </tbody> </table>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4. 1. 1. 이후 출생	1세반	'23. 1. 1. ~ '23. 12. 31.	2세반	'22. 1. 1. ~ '22. 12. 31.	3세반	'21. 1. 1. ~ '21. 12. 31.	4세반	'20. 1. 1. ~ '20. 12. 31.	5세반	'19. 1. 1. ~ '19. 12. 3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반편성</th> <th>출생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5. 1. 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4. 1. 1. ~ '24.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3. 1. 1. ~ '23. 12. 31.</td> </tr> <tr> <td>3세반</td> <td>'22. 1. 1. ~ '22. 12. 31.</td> </tr> <tr> <td>4세반</td> <td>'21. 1. 1. ~ '21. 12. 31.</td> </tr> <tr> <td>5세반</td> <td>'20. 1. 1. ~ '20. 12. 31.</td> </tr> </tbody> </table>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4. 1. 1. ~ '24. 12. 31.	2세반	'23. 1. 1. ~ '23. 12. 31.	3세반	'22. 1. 1. ~ '22. 12. 31.	4세반	'21. 1. 1. ~ '21. 12. 31.	5세반	'20. 1. 1. ~ '20. 12. 31.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4. 1. 1. 이후 출생																													
1세반	'23. 1. 1. ~ '23. 12. 31.																													
2세반	'22. 1. 1. ~ '22. 12. 31.																													
3세반	'21. 1. 1. ~ '21. 12. 31.																													
4세반	'20. 1. 1. ~ '20. 12. 31.																													
5세반	'19. 1. 1. ~ '19. 12. 31.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4. 1. 1. ~ '24. 12. 31.																													
2세반	'23. 1. 1. ~ '23. 12. 31.																													
3세반	'22. 1. 1. ~ '22. 12. 31.																													
4세반	'21. 1. 1. ~ '21. 12. 31.																													
5세반	'20. 1. 1. ~ '20. 12. 31.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64	<p>■ 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2024년생은 [24. 1. 1.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 2024년생은 만 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23. 1. 1.~23.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6년에도 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 예시) 2024년 4월 6일생은 [24. 1.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 12개월이 되는 '25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3. 1. 1.~23. 12. 31.] 출생아반인 1세반 편성 허용 (중략)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6년에도 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p>■ 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2025년생은 ['25. 1. 1.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 2025년생은 만 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24. 1. 1.~'24.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7년에도 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6일생은 ['25. 1.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 12개월이 되는 '26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4. 1. 1.~'24. 12. 31.] 출생아반인 1세반 편성 허용 (중략)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7년에도 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64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64	○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 유예아동('18. 1. 1.~'18. 12. 31.)은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 유예아동('19. 1. 1.~'19. 12. 31.)은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65	<p>■ 2025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3년 4월 1일생은 [23. 1. 1.~'23.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3년 4월 1일생은 [23. 1. 1.~'23.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23년생반) 편성 가능 	<p>■ 2026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4년 4월 1일생은 ['24. 1. 1.~'24.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4년 4월 1일생은 ['24. 1. 1.~'24.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25년생반) 편성 가능
67	* 취학유예(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24. 1. 1. 이후 출생 아동(이하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취학유예(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25. 1. 1. 이후 출생 아동(이하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69	<p>1) 입소 우선순위 <input type="radio"/>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중략) - (신설)</p>	<p>1) 입소 우선순위 <input type="radio"/>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중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25. 11.24. 시행)</p>
70	<p><input checked="" type="radi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적용원칙('24. 2. 9. 시행) (생략)</p>	<p><input checked="" type="radi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적용원칙('24. 2. 9.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적용원칙('25. 11. 24. 시행) (생략)</p>
71	<p>-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p>	<p>-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u>※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함.</u> <u>※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 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적용 가능. 단,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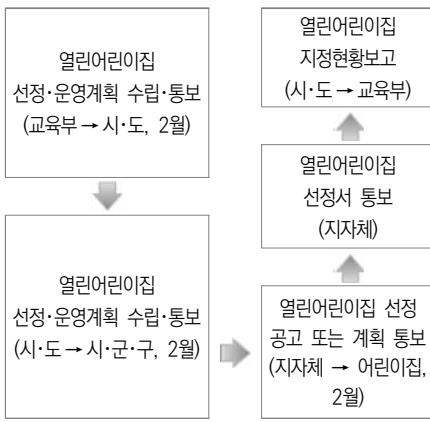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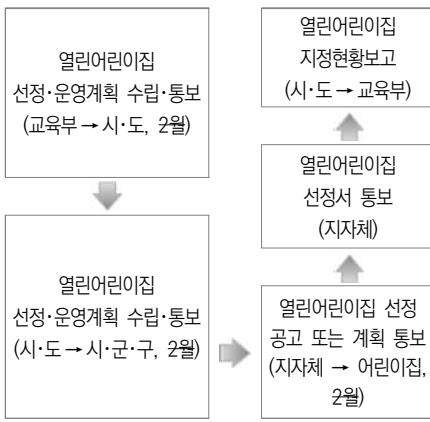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72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구분</th><th>확인 서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순위</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td><td>(생략)</td></tr> <tr> <td>(생략)</td><td>(생략)</td></tr> </tbody> </table>	순위	구분	확인 서류	1순위	(생략)	(생략)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생략)	(생략)	(생략)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구분</th><th>확인 서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순위</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td><td>(생략)</td></tr> <tr> <td>희귀·중증난치질환자인 형제자매 (시행 '25.11.24)</td><td> <u>내용 추가</u> <small>* 본문 참조</small> </td></tr> <tr> <td>(생략)</td><td>(생략)</td></tr> </tbody> </table>	순위	구분	확인 서류	1순위	(생략)	(생략)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생략)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인 형제자매 (시행 '25.11.24)	<u>내용 추가</u> <small>* 본문 참조</small>	(생략)	(생략)
순위	구분	확인 서류																						
1순위	(생략)	(생략)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생략)																						
	(생략)	(생략)																						
순위	구분	확인 서류																						
1순위	(생략)	(생략)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생략)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인 형제자매 (시행 '25.11.24)	<u>내용 추가</u> <small>* 본문 참조</small>																						
(생략)	(생략)																							
73	<p>○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신청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p>	<p>○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u>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 포함)</u>를 비치하여야 함 ※ <u>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신청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u></p>																						
75	<p>▣ 국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0세~5세, 장애 아동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p>▣ 국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0세~5세, 장애 아동 <u>0~12세</u>)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75	<p>○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5세(장애인 아동은 12세) 아동에 한함</p>	<p>○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5세(<u>장애인 아동은 0~12세</u>) 아동에 한함</p>																						
78	<p>*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p>	<p><u>*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u></p>																						
78	<p>* 05:30~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p>	<p>*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p>																						
88	<p>※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 및 보육료 단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관보육료는 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p>	<p>※ 적용시기: <u>변경된 내용 및 보육료 단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u></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91	<p>(예시) 보육료 수납액('25. 7~12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부모 보육료 (기본보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인 건 비 지 원 어 린 이 집</td> <td rowspan="6">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0세반</td> <td>567,000</td> </tr> <tr> <td>1세반</td> <td>500,000</td> </tr> <tr> <td>2세반</td> <td>414,000</td> </tr> <tr> <td>3세반</td> <td>280,000</td> </tr> <tr> <td>4세반</td> <td>280,000</td> </tr> <tr> <td>5세반</td> <td>280,00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616,000</td> </tr> <tr> <td>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td> <td>3~5세반</td> <td>616,000</td> </tr> <tr> <td>기 관 보 육 료 지 원 어 린 이 집</td> <td rowspan="6">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0세반</td> <td>567,000</td> </tr> <tr> <td></td> <td>1세반</td> <td>500,000</td> </tr> <tr> <td></td> <td>2세반</td> <td>414,000</td> </tr> <tr> <td></td> <td>3세반</td> <td>280,000</td> </tr> <tr> <td></td> <td>4세반</td> <td>280,000</td> </tr> <tr> <td></td> <td>5세반</td> <td>280,00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616,000</td> </tr> <tr> <td>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td> <td>3~5세반</td> <td>616,000</td> </tr> </tbody> </table> <p>(예시) 보육료 수납액('26. 1~12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부모 보육료 (기본보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인 건 비 지 원 어 린 이 집</td> <td rowspan="6">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0세반</td> <td>584,000</td> </tr> <tr> <td>1세반</td> <td>515,000</td> </tr> <tr> <td>2세반</td> <td>426,000</td> </tr> <tr> <td>3세반</td> <td>280,000</td> </tr> <tr> <td>4세반</td> <td>280,000</td> </tr> <tr> <td>5세반</td> <td>280,00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634,000</td> </tr> <tr> <td>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td> <td>3~5세반</td> <td>634,000</td> </tr> <tr> <td>기 관 보 육 료 지 원 어 린 이 집</td> <td rowspan="6">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0세반</td> <td>584,000</td> </tr> <tr> <td></td> <td>1세반</td> <td>515,000</td> </tr> <tr> <td></td> <td>2세반</td> <td>426,000</td> </tr> <tr> <td></td> <td>3세반</td> <td>280,000</td> </tr> <tr> <td></td> <td>4세반</td> <td>280,000</td> </tr> <tr> <td></td> <td>5세반</td> <td>280,00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634,000</td> </tr> <tr> <td>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td> <td>3~5세반</td> <td>634,000</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인 건 비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67,000	1세반	500,000	2세반	41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16,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16,000	기 관 보 육 료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67,000		1세반	500,000		2세반	41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16,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16,000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인 건 비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84,000	1세반	515,000	2세반	426,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34,000	기 관 보 육 료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84,000		1세반	515,000		2세반	426,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34,000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인 건 비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67,000																																																																																																	
		1세반	500,000																																																																																																	
		2세반	41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16,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16,000																																																																																																		
기 관 보 육 료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67,000																																																																																																	
		1세반	500,000																																																																																																	
		2세반	414,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16,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16,000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인 건 비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84,000																																																																																																	
		1세반	515,000																																																																																																	
		2세반	426,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34,000																																																																																																		
기 관 보 육 료 지 원 어 린 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84,000																																																																																																	
		1세반	515,000																																																																																																	
		2세반	426,000																																																																																																	
		3세반	280,000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34,000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중략)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 (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 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u> (중략)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 (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u>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 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u>
103	<p>※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건강 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개인위생 조치 관리 권고)</p>	<p>※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u>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u>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개인 위생 조치 관리 권고, <u>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189.2023.7.17.</u>)</p>
103	<p>*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근로자의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될 수 있음</p>	<p>* <u>일般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근로자의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될 수 있음</u></p>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u>품질 관리 기준</u>(부록9)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권장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107	<p>2) 급식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신설) 	<p>2) 급식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u>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급·간식 제공에 따른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급·간식 관리 및 식사 지도 등을 철저히 해야 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가 크거나 점성이 높아 기도에 걸릴 우려가 있는 음식은 작게 잘라서 제공 - 영유아가 급·간식을 먹는 동안에는 보육교직원이 주의 깊게 관찰 - 음식을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도록 교육하는 등 안전한 식사 지도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 다만, 20명 이하(<u>현원 기준</u>)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 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이론과 실습 포함(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u>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소아 심폐소생술 포함)</u>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u>안전교육</u>)을 실시해야 함(이론과 실습 포함(4시간))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다만 1분기 운영위원회는 3월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다만 1분기 운영위원회는 3월에 실시]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구 분	내 용												
139	<table border="1"> <tr> <td>(전략)</td> <td></td> </tr> <tr> <td>선정 및 재선정</td><td>(생 략)</td> </tr> <tr> <td>(후략)</td><td></td> </tr> </table>	(전략)		선정 및 재선정	(생 략)	(후략)		<table border="1"> <tr> <td>(전략)</td> <td></td> </tr> <tr> <td>선정 및 유지</td><td>(생 략)</td> </tr> <tr> <td>(후략)</td><td></td> </tr> </table>	(전략)		선정 및 유지	(생 략)	(후략)	
(전략)														
선정 및 재선정	(생 략)													
(후략)														
(전략)														
선정 및 유지	(생 략)													
(후략)														
139	* 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 '24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3년 10월~'24년 9월, 선정기간은 '24년 10월~11월)	* 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 당해 연도 11월 선정 시, 사업실적 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로 함)												
140	<p style="text-align: center;">■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p> 	<p style="text-align: center;">■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p> 												
150	20)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20)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 관리부(☎ 1661-5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 관리부(☎ 1661-5666)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165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u>[별표]</u> 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66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5-14호. 2025. 5. 26.)
166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참조)
166	21)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21)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172	※ 인사기록카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 2. 2~)	※ 인사기록카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 2. 2~)
173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사회복지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대표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겸직이 불가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사회복지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대표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겸임이 불가함
174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178	※ 임면보고 미대상자(파견인력,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조리사) 등) 구비서류 안내	※ 임면보고 미대상자(파견인력,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조리사), <u>대체운전원</u> 등) 구비서류 안내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15. 2. 2.부터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u>외국국적 보육교직원 임면 등</u>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15. 2. 2.부터 <u>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u>(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186	(신설)	<p>라. 교육명령제 이수여부 확인 * 세부 내용 본문 참조</p>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p>※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p>※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예시 주당 20시간 근무 시 30분)을 제외한 실제 보육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하여 경력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입력</p>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u>보육교사(임시교사)</u>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190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인건비 지원시설의</u>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191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 컨설턴트</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 컨설턴트, <u>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u></p>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여,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여, 다. <u>보육교직원</u>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191	<p>※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p>	<p>※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 <u>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산정은 승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한다.</u>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함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 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임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 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교사겸임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제외)이 어린이집에서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 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직 가능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연장보육 전담교사(1일 4시간)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 집에서 대체교사 겸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제외)이 어린이집에서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 하는 경우 타 어린이집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겸직 가능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1일 4시간)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직 가능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다른 시설에서의 겸임·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다른 시설에서의 겸임·겸직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업무, 사업행위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임·겸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업무, 사업행위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임·겸직 불가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겸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겸직할 수 없음.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겸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겸직할 수 없음. (이하 생략)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06	<p>*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특약: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보호자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담 제공 및 고소 또는 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1인당 기소전 최대 300만원, 심급별 최대 500만원, 총 1,8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보장(아동학대로 판결 받은 경우 보상 제외)</p>	<p>*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특약: <u>보육활동 중 보육교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비, 정신과적 치료·상담비를 보상(단, 아동학대 판결 시 보상 제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변호사 선임비: 기소 전 최대 500만원, 심급별 최대 500만원, 총 2,000만원 한도 내 실비 보상(1인당)</u> - <u>정신과적 치료상담비: 기소 전 최대 100만원, 기소 후 최대 200만원, 1회당 최대 10만원, 총 300만원 한도 내 실비 보상(1인당)</u>
211	<p>사후 조치</p> <p>(생략)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생년월일,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 법조문(예, 제47조제1항제1호 등 해당 호까지 기재 요망) 반드시 포함)</p>	<p>사후 조치</p> <p>(생략)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u>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u>),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생년월일,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 법조문(예, 제47조제1항제1호 등 해당 호까지 기재 요망) 반드시 포함)</p>
219	<p>○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집합교육 미개설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 (신설)</p>	<p>○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집합교육 미개설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 여부 사전확인 필수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과 '2급 승급교육'은 집합 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 다만, 다만,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2시간)은 대면 필수 ○ <u>지자체에서는 대상 인원 마감 시, 교육 신청이 불가한 '선착순' 방식보다는 교육 신청 인원이 파악 가능한 방식</u>으로 보수교육 대상자 신청 및 선정 권고 * <u>시스템에 대기 인원을 충분히 설정하여, 향후 교육 희망 인원 규모를 파악</u> ※ <u>교육부에서 시도별 보수교육 미이수 인원 등 조사 예정(연 2회 이상)</u></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20	<p>※ 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가능한 일정으로 교육을 신청(예정)한 증빙서류 첨부</p> <p>[채용 예정인 교사가 교육 신청 내역(캡처본 등)을 준비하여 원장이 임면 보고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p>	<p>※ 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가능한 일정으로 교육을 신청(예정)한 증빙서류 첨부</p> <p>[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p>				
22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 ('26.1.1. 예정), 조치 사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 ('26.2.12. 예정), 조치 사항〉				
222	<table border="1"> <tr> <td>원장 사전 직무 교육</td><td>「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td></tr> </table>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table border="1"> <tr> <td>원장 사전 직무 교육</td><td>「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td></tr> </table>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221	<p>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p> <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p>	<p>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p> <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p> <p>■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p> <p>* 세부 내용 본문 참고</p>				
222	<p>➊ 2023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5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6년 12월까지 받어야 함.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8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p> <p>- (신설)</p>	<p>➋ 2023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5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6년 12월까지 받어야 함.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8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p> <p>-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에 해당'</p> <p>- 2028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하여 1차 자격정지 1개월 차분 가능</p> <p>- 2029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차분 가능</p> <p>- 2030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차분 가능</p>				
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신청 당시,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이 만 1년 이내로 남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 <p>■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p> <p>* 세부 내용 본문 참고</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39	<p>○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교육 과정별 교육 개시 전까지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p> <p>- (신설)</p>	<p>○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교육 과정별 교육 개시 전까지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p> <p>- <u>지자체에서는 대상 인원 마감 시, 교육 신청이 불가한 '선착순' 방식보다는 교육 신청 인원이 파악 가능한 방식*</u>으로 보수교육 대상자 신청 및 선정 권고</p> <p>* <u>시스템에 대기 인원을 충분히 설정하여, 향후 교육 희망 인원 규모를 파악</u></p> <p>※ 교육부에서 시도별 보수교육 미이수 인원 등 조사 예정(연 2회 이상)</p>																																					
242	<p>나. 교육기관 및 과정</p> <p>○ 교육기관: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삼성복지재단, (사)에듀케어, 안산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홈페이지 주소</th> <th colspan="2">교육기관</th> </tr> <tr> <th>주관사 (가나다순)</th> <th>운영사</th> </tr> </thead> <tbody> <tr> <td>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td> <td>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td> <td>(주)이케이</td> </tr> <tr> <td>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td> <td>삼성복지재단</td> <td>(주)멀티캠퍼스</td> </tr> <tr> <td>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td> <td>(사)에듀케어</td> <td>(주)알파코</td> </tr> <tr> <td>마이에듀교사자람 https://jaram.ac</td> <td>안산대학교</td> <td>(주)마이에듀 (사)한국보육 교육협회</td> </tr> <tr> <td>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td> <td>한국성서대학교</td> <td>(주)중앙교육, (주)고려아카데미 컨설팅</td> </tr> </tbody> </table> <p>○ 교육 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p>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가나다순)	운영사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주)이케이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삼성복지재단	(주)멀티캠퍼스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주)알파코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s://jaram.ac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사)한국보육 교육협회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주)중앙교육, (주)고려아카데미 컨설팅	<p>나. 교육기관 및 과정</p> <p>○ 교육기관: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사)에듀케어, 안산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홈페이지 주소</th> <th colspan="2">교육기관</th> </tr> <tr> <th>주관사 (가나다순)</th> <th>운영사</th> </tr> </thead> <tbody> <tr> <td>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td> <td>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td> <td>키드키즈 평생교육원</td> </tr> <tr> <td>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td> <td>(사)에듀케어</td> <td>(주)에듀넷</td> </tr> <tr> <td>마이에듀교사자람 https://jaram.ac</td> <td>안산대학교</td> <td>(주)마이에듀</td> </tr> <tr> <td>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td> <td>한국성서대학교</td> <td>(주)중앙교육</td> </tr> </tbody> </table> <p>○ 교육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p>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가나다순)	운영사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주)에듀넷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s://jaram.ac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주)중앙교육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가나다순)	운영사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주)이케이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삼성복지재단	(주)멀티캠퍼스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주)알파코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s://jaram.ac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사)한국보육 교육협회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주)중앙교육, (주)고려아카데미 컨설팅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가나다순)	운영사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주)에듀넷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s://jaram.ac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주)중앙교육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또는 교육 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 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인증 유효 기간 동안 보육실습 실시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u>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u>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영유아보육법</u>」 제30조 (법률 제19898호)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는 매년 관할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는 매년 관할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u>교육부</u>로 제출
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로 정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지표의 평어린이집 평가와 평가 후 어린이집의 자율적상시적 질 관리 관련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안내서」 참고</u>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다만,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다만,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u>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u>」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는 「<u>영유아특별회계법</u>」에 따른 <u>영유아특별회계</u>에서 부담)
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원격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 수(1일 24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원격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 수(1일 24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일: 2026년 보육사업안내(IV. 보육교직원 관리,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⑭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임원장 지원) 규정 적용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4, 5세반 아동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23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2~3세 혼합반 또는 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3~5세 장애아반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4, 5세반 아동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8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80천원) 포함 ** '25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2~3세 혼합반 또는 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8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8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3~5세 장애아반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80천원, 2명 이상은 월 380천원 지원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100천원(4시간 기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139천원(4시간 기준)* 이상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 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1,100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 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1,139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시행규칙 별표2)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어린이집(21~39인, 법 제52조)의 경우 원장 겸직은 가능함(단, 처우 개선비는 미지급) ※ 보육교사 겸직 원장도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해야하며 이수시 운영비 지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시행규칙 별표2)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어린이집(21~39인, 법 제52조)의 경우 원장 겸임은 가능함(단, 처우개선비는 미지급) ※ 보육교사 겸임 원장도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해야하며 이수시 운영비 지급가능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68	<p>다.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p>다. <u>이용 및 지원대상</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독립반</th> <th>통합반</th> </tr> </thead> <tbody> <tr> <td>이용 대상</td> <td>6~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td> <td>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td> </tr> <tr> <td>지원 대상</td> <td>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td> <td></td> </tr> </tbody> </table> <p>※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p>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 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 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인보육료: 616천원('25.7.1.~)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616천원('25.7.1.~),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 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08천원('2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인보육료: 634천원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634천원, 인건비미지원 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 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17천원 																																																																					
271	<p>2025년 하반기 (전)</p> <p>■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0세반</th> <th>1세반</th> <th>2세반</th> <th>3~5세반</th> <th>3~5세반</th> <th>장애아</th> </tr> </thead> <tbody> <tr> <td>적용시기</td> <td>('25.7.1~)</td> <td>('25.7.1~)</td> <td>('25.7.1~)</td> <td>('25.1.1 ~2.29.)</td> <td>('25.3.1~)</td> <td>('25.7.1~)</td> </tr> <tr> <td>계</td> <td>1,227,000</td> <td>859,000</td> <td>658,000</td> <td>280,000</td> <td>280,000</td> <td>1,336,000</td> </tr> <tr> <td>부모보육료</td> <td>567,000</td> <td>500,000</td> <td>414,000</td> <td>280,000</td> <td>280,000</td> <td>616,000</td> </tr> <tr> <td>기관보육료</td> <td>660,000</td> <td>359,000</td> <td>244,000</td> <td>-</td> <td>-</td> <td>720,000</td> </tr> </tbody> </table> <p>2026년 (후)</p> <p>■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0세반</th> <th>1세반</th> <th>2세반</th> <th>3~5세반</th> <th>3~5세반</th> <th>장애아</th> </tr> </thead> <tbody> <tr> <td>적용시기</td> <td>('26.1.1~)</td> <td>('26.1.1~)</td> <td>('26.1.1~)</td> <td>('26.1.1~ 2.28.)</td> <td>('26.3.1~)</td> <td>('26.1.1~)</td> </tr> <tr> <td>계</td> <td>1,277,000</td> <td>892,000</td> <td>682,000</td> <td>280,000</td> <td>280,000</td> <td>1,376,000</td> </tr> <tr> <td>부모보육료</td> <td>584,000</td> <td>515,000</td> <td>426,000</td> <td>280,000</td> <td>280,000</td> <td>634,000</td> </tr> <tr> <td>기관보육료</td> <td>693,000</td> <td>377,000</td> <td>256,000</td> <td>-</td> <td>-</td> <td>742,000</td> </tr> </tbody> </table>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5.7.1~)	('25.7.1~)	('25.7.1~)	('25.1.1 ~2.29.)	('25.3.1~)	('25.7.1~)	계	1,227,000	859,000	658,000	280,000	280,000	1,336,000	부모보육료	567,000	500,000	414,000	280,000	280,000	616,000	기관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	-	720,000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6.1.1~)	('26.1.1~)	('26.1.1~)	('26.1.1~ 2.28.)	('26.3.1~)	('26.1.1~)	계	1,277,000	892,000	682,000	280,000	280,000	1,376,000	부모보육료	584,000	515,000	426,000	280,000	280,000	634,000	기관보육료	693,000	377,000	256,000	-	-	742,000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5.7.1~)	('25.7.1~)	('25.7.1~)	('25.1.1 ~2.29.)	('25.3.1~)	('25.7.1~)																																																																	
계	1,227,000	859,000	658,000	280,000	280,000	1,336,000																																																																	
부모보육료	567,000	500,000	414,000	280,000	280,000	616,000																																																																	
기관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	-	720,000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6.1.1~)	('26.1.1~)	('26.1.1~)	('26.1.1~ 2.28.)	('26.3.1~)	('26.1.1~)																																																																	
계	1,277,000	892,000	682,000	280,000	280,000	1,376,000																																																																	
부모보육료	584,000	515,000	426,000	280,000	280,000	634,000																																																																	
기관보육료	693,000	377,000	256,000	-	-	742,000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상기 기관보육료 지원단가는 7월 이용현황확정 기준 8월 지급시 부터 적용)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보육료 지원단가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25.1.20. 발행본)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상기 기관보육료 지원단가는 7월 이용현황확정 기준 8월 지급시 부터 적용)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보육료 지원단가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25.1.20. 발행본) 참고
286	<p>(예시) 2025년 3월 17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 $280\text{천원} \times 13\text{일}/24\text{일} = 151,660\text{원}$(원단위 절사) • 13일 : 실제 보육일수 / 24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p>(예시) 2025년 3월 17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 $280\text{천원} \times 13\text{일}/25\text{일} = 145,600\text{원}$(원단위 절사) • 13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286	<p>(예시) 5월 9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40\text{천원} \times 5\text{일}/24\text{일} = 112,500\text{원}$(원단위 절사) • 부모 지급액 : $540\text{천원} - 112.5\text{천원} = 427,500\text{원}$(원단위 절사) • 5일 : 실제 보육일수 / 24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p>(예시) 5월 9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84\text{천원} \times 5\text{일}/24\text{일} = 121,660\text{원}$(원단위 절사) • 부모 지급액 : $584\text{천원} - 121.66\text{천원} = 462,340\text{원}$(원단위 절사) • 5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287	<p>(지급액 예시) 3월 12일 입소한 0세 아동(0세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지급액 : $540,000 \times 17/24(\text{일}) = 382,500\text{원}$ - 부모 지급액 : $540,000 - 382,500\text{원} = 157,500\text{원}$ 	<p>(지급액 예시) 3월 12일 입소한 0세 아동(0세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지급액 : $584,000 \times 17/25(\text{일}) = 397,120\text{원}$ - 부모 지급액 : $584,000 - 397,120\text{원} = 186,880\text{원}$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입학: '25. 1. 2~3. 1.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 ('22.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2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6세아('18. 1. 1~18.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입학: '26. 1. 2~3. 1.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 ('23.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3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3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6세아('19. 1. 1~19.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293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4.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3. 01. 01. ~ '23.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2. 01. 01. ~ '22. 12. 31.</td> </tr> <tr> <td>3세반</td> <td>'21. 01. 01. ~ '21. 12. 31.</td> </tr> <tr> <td>4세반</td> <td>'20. 01. 01. ~ '20.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td> </tr> <tr> <td>취학아동 (방과후보 육료)</td> <td>'18. 01. 01. ~ '12. 12. 31.</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3. 12. 31.	2세반	'22. 01. 01. ~ '22. 12. 31.	3세반	'21. 01. 01. ~ '21. 12. 31.	4세반	'20. 01. 01. ~ '20. 12. 31.	5세반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 육료)	'18. 01. 01. ~ '12. 12. 31.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5.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4. 01. 01. ~ '24.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3. 01. 01. ~ '23. 12. 31.</td> </tr> <tr> <td>3세반</td> <td>'22. 01. 01. ~ '22. 12. 31.</td> </tr> <tr> <td>4세반</td> <td>'21. 01. 01. ~ '21. 12. 31.</td> </tr> <tr> <td>5세반</td> <td>'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19. 12. 31.)</td> </tr> <tr> <td>취학아동 (방과후보 육료)</td> <td>'19. 01. 01. ~ '13. 12. 31.</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5.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4. 01. 01. ~ '24. 12. 31.	2세반	'23. 01. 01. ~ '23. 12. 31.	3세반	'22. 01. 01. ~ '22. 12. 31.	4세반	'21. 01. 01. ~ '21. 12. 31.	5세반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19.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 육료)	'19. 01. 01. ~ '13.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3. 12. 31.																																																							
2세반	'22. 01. 01. ~ '22. 12. 31.																																																							
3세반	'21. 01. 01. ~ '21. 12. 31.																																																							
4세반	'20. 01. 01. ~ '20. 12. 31.																																																							
5세반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 육료)	'18. 01. 01. ~ '12.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5.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4. 01. 01. ~ '24. 12. 31.																																																							
2세반	'23. 01. 01. ~ '23. 12. 31.																																																							
3세반	'22. 01. 01. ~ '22. 12. 31.																																																							
4세반	'21. 01. 01. ~ '21. 12. 31.																																																							
5세반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19.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 육료)	'19. 01. 01. ~ '13. 12. 31.																																																							
293	<p style="text-align: center;">나. 지원 단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연령 (적용시기)</th> <th colspan="3">지원단가</th> </tr> <tr> <th>기본보육</th> <th>야간</th> <th>24시</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 (25.7.1~)</td> <td>567,000</td> <td>567,000</td> <td>850,000</td> </tr> <tr> <td>1세반 (25.7.1~)</td> <td>500,000</td> <td>500,000</td> <td>750,000</td> </tr> <tr> <td>2세반 (25.7.1~)</td> <td>414,000</td> <td>414,000</td> <td>621,000</td> </tr> <tr> <td>3~5세반 (25.1.1~2.29.)</td> <td>280,000</td> <td>280,000</td> <td>420,000</td> </tr> <tr> <td>3~5세반 (25.3.1~)</td> <td>280,000</td> <td>280,000</td> <td>420,000</td> </tr> </tbody> </table>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5.7.1~)	567,000	567,000	850,000	1세반 (25.7.1~)	500,000	500,000	750,000	2세반 (25.7.1~)	414,000	414,000	621,000	3~5세반 (25.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5.3.1~)	280,000	280,000	420,000	<p style="text-align: center;">나. 지원 단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연령 (적용시기)</th> <th colspan="3">지원단가</th> </tr> <tr> <th>기본보육</th> <th>야간</th> <th>24시</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 (26.1.1~)</td> <td>584,000</td> <td>584,000</td> <td>876,000</td> </tr> <tr> <td>1세반 (26.1.1~)</td> <td>515,000</td> <td>515,000</td> <td>772,500</td> </tr> <tr> <td>2세반 (26.1.1~)</td> <td>426,000</td> <td>426,000</td> <td>639,000</td> </tr> <tr> <td>3~5세반 (26.1.1~2.28.)</td> <td>280,000</td> <td>280,000</td> <td>420,000</td> </tr> <tr> <td>3~5세반 (26.3.1~)</td> <td>280,000</td> <td>280,000</td> <td>420,000</td> </tr> </tbody> </table>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5.7.1~)	567,000	567,000	850,000																																																					
1세반 (25.7.1~)	500,000	500,000	750,000																																																					
2세반 (25.7.1~)	414,000	414,000	621,000																																																					
3~5세반 (25.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5.3.1~)	280,000	280,000	420,000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293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p>*「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p>*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01	<p>※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3월부터 지원</p> <p>-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1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25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1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9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6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12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p>	<p>※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u>2026년</u> 3월부터 지원</p> <p>-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2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7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u>26년도</u>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2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7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20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7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13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u>27년</u>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p>
304	<p>○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616천원 지원('25.7.1.~)</p>	<p>○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u>634천원</u> 지원('25.7.1.~)</p>
305	<p>- 취학대상('18. 1. 1.~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함)</p>	<p>- 취학대상('19. 1. 1.~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함)</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08	<p>2) 장애아동</p> <p>○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308,000원) (국비+지방비)</p>	<p>2) 장애아동</p> <p>○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u>317,000원</u>) (국비+지방비)</p>
308	<p>※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p>	<p>(삭제) * (참고사항) 해당 제도를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종 복되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임</p>
309	<pre> graph TD subgraph Left [2025년] direction TB A[교육부 (보육담당부서)] -- 정산보고 --> B[시·도 보육담당부서] B -- 자금 전출 --> C[시·도 교육청] C -- 정산 보고 --> D[시·군·구 보육담당부서] D -- 보조금 신청 --> E[어린이집] E -- 보조금 지급 --> F[한국사회보장 정보원] F -- 예탁 ↓ 정산보고 --> G[국민행복카드 사업자] G -- 보육료 정산 --> H[한국사회보장 정보원] H -- 예탁금 지급 --> I[국민행복카드 사업자] end subgraph Right [2026년] direction TB A[교육부] -- 정산보고 --> B[시·도 보육담당부서] B -- 자금 전출 --> C[시·도 교육청] C -- 정산 보고 --> D[시·군·구 보육담당부서] D -- 보조금 신청 --> E[어린이집] E -- 보조금 지급 --> F[한국사회보장 정보원] F -- 예탁 ↓ 정산보고 --> G[국민행복카드 사업자] G -- 보육료 정산 --> H[한국사회보장 정보원] H -- 예탁금 지급 --> I[국민행복카드 사업자] end </pre>	<pre> graph TD subgraph Left [2025년] direction TB A[교육부 (보육담당부서)] -- 정산보고 --> B[시·도 보육담당부서] B -- 자금 전출 --> C[시·도 교육청] C -- 정산 보고 --> D[시·군·구 보육담당부서] D -- 보조금 신청 --> E[어린이집] E -- 보조금 지급 --> F[한국사회보장 정보원] F -- 예탁 ↓ 정산보고 --> G[국민행복카드 사업자] G -- 보육료 정산 --> H[한국사회보장 정보원] H -- 예탁금 지급 --> I[국민행복카드 사업자] end subgraph Right [2026년] direction TB A[교육부] -- 정산보고 --> B[시·도 보육담당부서] B -- 자금 전출 --> C[시·도 교육청] C -- 정산 보고 --> D[시·군·구 보육담당부서] D -- 보조금 신청 --> E[어린이집] E -- 보조금 지급 --> F[한국사회보장 정보원] F -- 예탁 ↓ 정산보고 --> G[국민행복카드 사업자] G -- 보육료 정산 --> H[한국사회보장 정보원] H -- 예탁금 지급 --> I[국민행복카드 사업자] end </pre>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09	<p>1) 보육료 지원 체계</p> <p>① 교육부(보육담당부서)에서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p> <p>② 교육부(초등 방과후 담당부서)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p> <p>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p> <p>④ 교육부(초등 방과후 담당부서)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 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p> <p>⑤ 교육부(초등 방과후 담당부서)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p> <p>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p> <p>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이하 “사보원”)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p> <p>⑧ 사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p> <p>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 지원 결제금액을 사보원과 정산, 사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p> <p>⑩ 사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p>	<p>1) 보육료 지원 체계</p> <p>① 교육부에서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p> <p>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p> <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1] 기준재정 수요액의 총정향목총정단위 및 산정기준 7. 늘봄 학교 및 방과후학교사업비</p> <p>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p> <p>④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p> <p>⑤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p> <p>⑥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이하 “사보원”)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p> <p>⑦ 사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p> <p>⑧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 지원 결제금액을 사보원과 정산, 사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p> <p>⑨ 사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p>
311	•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311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11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원장, 대표자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31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단가</th> <th>지원한도액</th> <th>지원율</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아동</td> <td>4,000</td> <td>240,000</td> <td>기준액×100%</td> </tr> <tr> <td>장애인아동</td> <td>5,000</td> <td>300,000</td> <td>기준액×1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인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단가</th> <th>지원한도액</th> <th>지원율</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아동</td> <td>4,000</td> <td>240,000</td> <td>기준액×100%</td> </tr> <tr> <td>장애인아동</td> <td>5,000</td> <td>300,000</td> <td>기준액×1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인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인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인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311	※ 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05:30~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05:30~07:30분 사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312	<p>나. 야간연장 보육료 (중략)</p> <p>○ 지원한도: 월 60시간</p>	<p>나. 야간연장 보육료 (중략)</p> <p>○ 지원한도: 월 60시간(~'26.2.)</p> <p><u>※ 2026년 3월 이용실적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u></p>																								
312	<p>다. 야간12시간 보육료</p> <p>○ 지원단가: '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 참조</p>	<p>다. 야간12시간 보육료</p> <p>○ 지원단가: '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 및 '장애인보육료 단가표' 참조</p>																								
313	<p>라. 24시간 보육료</p> <p>○ 지원단가: '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 참조</p>	<p>라. 24시간 보육료</p> <p>○ 지원단가: '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 및 '장애인보육료 단가표' 참조</p>																								
313	<p>[■] '25년 9월 중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p>[■] 보육 가능 일수가 26일인 달에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기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기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인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인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24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25. 1월부터 적용)”의 월 지급액을 의미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
325	■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 세부 내용 본문 참조
326~327	동 페이지 내의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330~331	동 페이지 내의 현원 18~20인 이하	현원 18인~20인 이하
330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60세 초과 보조교사와 연장 보육 전담교사가 대체교사 지원 시에도 같은.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60세 초과 보조교사와 연장 보육 전담교사가 대체교사 지원 시에도 같은.
331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하되, 해당 기관 전체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편성 시 재원아동이 1명인 1개 반에 대하여도 교사 인건비 지원 * (예) 0세아 11명 재원 중인 기관이 1:2반 5개 (A,B,C,D,E반) 1:1반 1개(F반) 편성 시 1:1반 1개 반(F반)에 대해 인건비 지원
331	* (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	* (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 반 모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31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총족률) 종료에 따라 '25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원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26년까지' 유아반 최소 기준 원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① (생략) ② 전체 2개반(미충족반 포함)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해당 연령반은 정원총족률과 관계없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① (생략) ② <u>전체 2개반(미충족반 포함) 이상 운영 어린이집</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연령반 만을 2개반 이상 편성한 경우, 마지막 1개반을 제외한 반은 연령별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 1세반 2개반 만을 개설한 경우, A반 3명, B반 1명 → 지원가능, A반 2명, B반 1명 → 지원불가 ③ (삭제)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7.09%/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7.09% × 12.9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1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5%/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7.19%/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7.19% × 13.14%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1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교육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 기관보육료 720천원(25.7.1.~)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교육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 기관보육료 742천원 지원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844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908천원 지원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616천원 ('25.7.1.~)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u>634천원</u> 지원 																																																									
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 아동'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 정부지원단가 (616천원)의 50%인 308천원('25.7.1.~)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 아동'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 정부지원단가 (634천원)의 50%인 317천원 지원 																																																									
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844천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u>1,908천 원</u> 지원 																																																									
346	<p style="text-align: center;">■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인건비지원 (교사 1인)</th> <th>보육료 지원 (장애인 1인)</th> </tr> </thead> <tbody> <tr> <td>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td> <td></td> <td></td> </tr> <tr> <td>-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td> <td>80%</td> <td>616천원</td> </tr> <tr> <td>-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td> <td>-</td> <td>부모 보육료: 616천원 기관 보육료: 720천원</td> </tr> <tr> <td>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td> <td></td> <td></td> </tr> <tr> <td>- 인건비 지원</td> <td>80% (국공립·법인) <u>1,844천원</u> (민간)</td> <td>616천원</td> </tr> <tr> <td>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80% 80% 30% 3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280천원 280천원 </td> </tr> <tr> <td>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인건비지원 (교사 1인)</th> <th>보육료 지원 (장애인 1인)</th> </tr> </thead> <tbody> <tr> <td>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td> <td></td> <td></td> </tr> <tr> <td>-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td> <td>80%</td> <td>634천원</td> </tr> <tr> <td>-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td> <td>-</td> <td>부모 보육료: 634천원 기관 보육료: 742천원</td> </tr> <tr> <td>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td> <td></td> <td></td> </tr> <tr> <td>- 인건비 지원</td> <td>80% (국공립·법인) <u>1,908천원</u> (민간)</td> <td>634천원</td> </tr> <tr> <td>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80% 80% 30% 3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280천원 280천원 </td> </tr> <tr> <td>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td> </tr> </tbody> </table>	구분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인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	80%	616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	-	부모 보육료: 616천원 기관 보육료: 72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	80% (국공립·법인) <u>1,844천원</u> (민간)	616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80% 80%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구분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인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	80%	634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	-	부모 보육료: 634천원 기관 보육료: 742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	80% (국공립·법인) <u>1,908천원</u> (민간)	634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80% 80%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구분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인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	80%	616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	-	부모 보육료: 616천원 기관 보육료: 72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	80% (국공립·법인) <u>1,844천원</u> (민간)	616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80% 80%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구분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인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교육부장관 승인)	80%	634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교육부장관 미승인)	-	부모 보육료: 634천원 기관 보육료: 742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																																																											
- 인건비 지원	80% (국공립·법인) <u>1,908천원</u> (민간)	634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80% 80%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 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46	※ 변경된 보육료 지원 단기는 '25.7.1.부터 적용(기관 보육료는 7월 이용현황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 변경된 보육료 지원 단기는 '25.7.1.부터 적용(기관 보육료는 7월 이용현황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347	○ 2세 이상 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 (지정 취소 사항)(연령은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 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 2세 이상 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 (지정 취소 사항)(연령은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 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348	•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u>하되, 해당 기관 전체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편성 시 재원이동이 1명인 1개 반에 대하여도 교사 인건비 지원</u> * (예) 0세아 11명 재원 중인 기관이 1:2반 5개 (A, B, C, D, E반) 1:1반 1개(F반) 편성 시 1:1반 1개반(F반)에 대해 인건비 지원																								
353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임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354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826,000</td> <td>2,130,000</td> <td>2,435,000</td> </tr> </tbody> </table>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826,000	2,130,000	2,435,0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889,000</td> <td>2,204,000</td> <td>2,521,000</td> </tr> <tr> <td>(4대보험 사용자부담금)</td> <td>(133,030)</td> <td>(150,030)</td> <td>(186,610)</td> </tr> <tr> <td>(퇴직적립금)</td> <td>(117,010)</td> <td>(136,870)</td> <td>(155,560)</td> </tr> </tbody> </table>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889,000	2,204,000	2,521,000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133,030)	(150,030)	(186,610)	(퇴직적립금)	(117,010)	(136,870)	(155,560)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826,000	2,130,000	2,435,000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889,000	2,204,000	2,521,000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133,030)	(150,030)	(186,610)																							
(퇴직적립금)	(117,010)	(136,870)	(155,560)																							
355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예, 새벽 05:30~07:30 및 19:30~23:30 근무할 경우 6시간 근무한 것임)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 (신설)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예, 새벽 05:30~07:30 및 19:30~23:30 근무할 경우 6시간 근무한 것임)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인해 주간 교사가 단기간 대체보육을 담당할 경우, 담당 주간 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요건 (해당 반의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 시까지 반드시 근무) 적용 가능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연장반 별 월 501,000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연장반 별 월 519,000원 지원 																								
3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IX-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IX-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u>야간연장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 수요, 어린이집 신청,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 권장, 단, 지정 횟수는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함.</u> 																								
3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자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자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단,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정할 수 있음 																								
3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자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중략)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 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자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 등에 지정할 수 있음 ○ (중략)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 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35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826,000</td> <td>2,130,000</td> <td>2,435,000</td> </tr> </tbody> </table>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826,000	2,130,000	2,435,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u>1,889,000</u></td> <td><u>2,204,000</u></td> <td><u>2,521,000</u></td> </tr> <tr> <td>(4대보험 사용자부담금)</td> <td>(133,030)</td> <td>(150,030)</td> <td>(186,610)</td> </tr> <tr> <td>(퇴직적립금)</td> <td>(117,010)</td> <td>(136,870)</td> <td>(155,560)</td> </tr> </tbody> </table>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u>1,889,000</u>	<u>2,204,000</u>	<u>2,521,000</u>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133,030)	(150,030)	(186,610)	(퇴직적립금)	(117,010)	(136,870)	(155,560)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826,000	2,130,000	2,435,000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u>1,889,000</u>	<u>2,204,000</u>	<u>2,521,000</u>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133,030)	(150,030)	(186,610)																							
(퇴직적립금)	(117,010)	(136,870)	(155,560)																							
359	<p>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130,000원(월) 지원</p>	<p>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u>2,204,000원(월)</u> 지원</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61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 (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u>지정한 경우</u> ,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비용 (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63	○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근무수당 일 60,000원 지원	○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교사 겸임 원장 포함)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근무수당 일 60,000원 지원																																																												
363	(신설)	마.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세부 내용 본문 참조																																																												
366	※ 적용시기: 지원 단기는 2025년 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 적용시기: 지원 단기는 <u>2026년 1월 이용현황 기준 2월 지급</u> 시부터 적용																																																												
366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table border="1"><thead><tr><th>연령</th><th>0세반</th><th>1세반</th><th>2세반</th><th>장애아</th></tr></thead><tbody><tr><td>기관 보육료</td><td>660,000</td><td>359,000</td><td>244,000</td><td>720,000</td></tr></tbody></table> ※ '25.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 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720,000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table border="1"><thead><tr><th>연령</th><th>0세반</th><th>1세반</th><th>2세반</th><th>장애아</th></tr></thead><tbody><tr><td>기관 보육료</td><td><u>693,000</u></td><td><u>377,000</u></td><td><u>256,000</u></td><td><u>742,000</u></td></tr></tbody></table> ※ '25.7월 이용현황 확정분에 대한 8월 지급부터 적용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 보육료	<u>693,000</u>	<u>377,000</u>	<u>256,000</u>	<u>742,000</u>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 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720,000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 보육료	<u>693,000</u>	<u>377,000</u>	<u>256,000</u>	<u>742,000</u>																																																										
367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table border="1"><thead><tr><th>반구분</th><th>(생략)</th><th>기관보육료(원)</th></tr></thead><tbody><tr> <td>0세반</td><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660,000</td></tr> <tr> <td>0, 1세반</td><td>660,000</td></tr> <tr> <td>1세반</td><td>359,000</td></tr> <tr> <td>1, 2세반</td><td>359,000</td></tr> <tr> <td>2세반</td><td>244,000</td></tr> <tr> <td>2, 3세반</td><td>244,000</td></tr> <tr> <td>장애아반</td><td>0</td></tr> <tr> <td>장애아 방과후반</td><td>720,000</td></tr> </tbody></table> <table border="1"><thead><tr><th>반구분</th><th>(생략)</th><th>기관보육료(원)</th></tr></thead><tbody><tr> <td>0세반</td><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u>693,000</u></td></tr> <tr> <td>0, 1세반</td><td><u>377,000</u></td></tr> <tr> <td>1세반</td><td><u>256,000</u></td></tr> <tr> <td>1, 2세반</td><td><u>256,000</u></td></tr> <tr> <td>2세반</td><td><u>256,000</u></td></tr> <tr> <td>2, 3세반</td><td><u>0</u></td></tr> <tr> <td>장애아반</td><td><u>742,000</u></td></tr> <tr> <td>장애아 방과후반</td><td><u>632,000</u></td></tr> </tbody></table>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660,000	0, 1세반	660,000	1세반	359,000	1, 2세반	359,000	2세반	244,000	2, 3세반	244,000	장애아반	0	장애아 방과후반	720,000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u>693,000</u>	0, 1세반	<u>377,000</u>	1세반	<u>256,000</u>	1, 2세반	<u>256,000</u>	2세반	<u>256,000</u>	2, 3세반	<u>0</u>	장애아반	<u>742,000</u>	장애아 방과후반	<u>632,000</u>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table border="1"><thead><tr><th>반구분</th><th>(생략)</th><th>기관보육료(원)</th></tr></thead><tbody><tr> <td>0세반</td><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u>693,000</u></td></tr> <tr> <td>0, 1세반</td><td><u>377,000</u></td></tr> <tr> <td>1세반</td><td><u>256,000</u></td></tr> <tr> <td>1, 2세반</td><td><u>256,000</u></td></tr> <tr> <td>2세반</td><td><u>256,000</u></td></tr> <tr> <td>2, 3세반</td><td><u>0</u></td></tr> <tr> <td>장애아반</td><td><u>742,000</u></td></tr> <tr> <td>장애아 방과후반</td><td><u>632,000</u></td></tr> </tbody></table>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u>693,000</u>	0, 1세반	<u>377,000</u>	1세반	<u>256,000</u>	1, 2세반	<u>256,000</u>	2세반	<u>256,000</u>	2, 3세반	<u>0</u>	장애아반	<u>742,000</u>	장애아 방과후반	<u>632,000</u>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660,000																																																												
0, 1세반		660,000																																																												
1세반		359,000																																																												
1, 2세반		359,000																																																												
2세반		244,000																																																												
2, 3세반		244,000																																																												
장애아반		0																																																												
장애아 방과후반		720,000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u>693,000</u>																																																												
0, 1세반		<u>377,000</u>																																																												
1세반		<u>256,000</u>																																																												
1, 2세반		<u>256,000</u>																																																												
2세반		<u>256,000</u>																																																												
2, 3세반		<u>0</u>																																																												
장애아반		<u>742,000</u>																																																												
장애아 방과후반		<u>632,000</u>																																																												
반구분	(생략)	기관보육료(원)																																																												
0세반	(생략)	<u>693,000</u>																																																												
0, 1세반		<u>377,000</u>																																																												
1세반		<u>256,000</u>																																																												
1, 2세반		<u>256,000</u>																																																												
2세반		<u>256,000</u>																																																												
2, 3세반		<u>0</u>																																																												
장애아반		<u>742,000</u>																																																												
장애아 방과후반		<u>632,000</u>																																																												
371	※ 적용시기: 2025년 7월 이용현황 확정 기준 8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적용시기: <u>2026년 1월 이용현황 확정 기준 2월 지급 시부터 적용</u>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71	<p>나. 지원 대상</p> <p>○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반(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p>	<p>나. 지원 대상</p> <p>○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1~2세반(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p>																																																								
371	<p>다. 지원 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반구분</th><th>0세 (0~1세반)</th><th>1세 (1~2세반)</th><th>2세 (2~3세반)</th></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td>660,000</td><td>359,000</td><td>244,000</td></tr> </tbody> </table>	반구분	0세 (0~1세반)	1세 (1~2세반)	2세 (2~3세반)	지원금액	660,000	359,000	244,000	<p>다. 지원 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반구분</th><th>0세 (0~1세반)</th><th>1세 (1~2세반)</th><th>2세 (2~3세반)</th></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td>660,000</td><td>377,000</td><td>256,000</td></tr> </tbody> </table> <p>※ 2026년 1월부터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세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지원(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1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참조)</p>	반구분	0세 (0~1세반)	1세 (1~2세반)	2세 (2~3세반)	지원금액	660,000	377,000	256,000																																								
반구분	0세 (0~1세반)	1세 (1~2세반)	2세 (2~3세반)																																																							
지원금액	660,000	359,000	244,000																																																							
반구분	0세 (0~1세반)	1세 (1~2세반)	2세 (2~3세반)																																																							
지원금액	660,000	377,000	256,000																																																							
372	<p>○ (지원 예시) 2025년 1월 보육일수 23일 기준 ※ 단가 변경('25.7.1.) 이전 시점에 대한 예시이므로, 변경 전 지원단가 표시</p> <p>지원 예시 ① ~ ⑤</p>	<p>○ (지원 예시) 2026년 1월 보육일수 26일 기준 ※ 단가 변경('25.7.1.) 이전 시점에 대한 예시이므로, 변경 전 지원단가 표시</p> <p>지원 예시 ① ~ ⑤ 삭제</p>																																																								
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⑥ (1~2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3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th><th>재원상태</th><th>기관보육료</th><th>인센티브</th></tr> </thead> <tbody> <tr> <td>A(1세)</td><td>재원</td><td>342,000</td><td>0</td></tr> <tr> <td>B(1세)</td><td>재원</td><td>342,000</td><td>0</td></tr> <tr> <td>C(1세)</td><td>재원</td><td>342,000</td><td>0</td></tr> <tr> <td>D(1세)</td><td>'25. 1. 16. 퇴소</td><td>$342,000 \times 13/23 =$ 193,300</td><td>0</td></tr> <tr> <td>E(2세)</td><td>'25. 1. 16. 퇴소</td><td>$232,000 \times 13/23 =$ 131,130</td><td>100,870</td></tr> <tr> <td>F(2세)</td><td>'25. 1. 22. 입소</td><td>$232,000 \times 9/23 =$ 60,520</td><td>0</td></tr> </tbody> </table>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1세)	재원	342,000	0	B(1세)	재원	342,000	0	C(1세)	재원	342,000	0	D(1세)	'25. 1. 16. 퇴소	$342,000 \times 13/23 =$ 193,300	0	E(2세)	'25. 1. 16. 퇴소	$232,000 \times 13/23 =$ 131,130	100,870	F(2세)	'25. 1. 22. 입소	$232,000 \times 9/23 =$ 60,52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2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3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th><th>재원상태</th><th>기관보육료</th><th>인센티브</th></tr> </thead> <tbody> <tr> <td>A(1세)</td><td>재원</td><td>377,000</td><td>0</td></tr> <tr> <td>B(1세)</td><td>재원</td><td>377,000</td><td>0</td></tr> <tr> <td>C(1세)</td><td>재원</td><td>377,000</td><td>0</td></tr> <tr> <td>D(1세)</td><td>'25. 1. 16. 퇴소</td><td>$377,000 \times 13/26 =$ 188,500</td><td>0</td></tr> <tr> <td>E(2세)</td><td>'25. 1. 16. 퇴소</td><td>$256,000 \times 13/26 =$ 128,000</td><td>128,000</td></tr> <tr> <td>F(2세)</td><td>'25. 1. 22. 입소</td><td>$256,000 \times 9/26 =$ 88,610</td><td>0</td></tr> </tbody> </table>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1세)	재원	377,000	0	B(1세)	재원	377,000	0	C(1세)	재원	377,000	0	D(1세)	'25. 1. 16. 퇴소	$377,000 \times 13/26 =$ 188,500	0	E(2세)	'25. 1. 16. 퇴소	$256,000 \times 13/26 =$ 128,000	128,000	F(2세)	'25. 1. 22. 입소	$256,000 \times 9/26 =$ 88,610	0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1세)	재원	342,000	0																																																							
B(1세)	재원	342,000	0																																																							
C(1세)	재원	342,000	0																																																							
D(1세)	'25. 1. 16. 퇴소	$342,000 \times 13/23 =$ 193,300	0																																																							
E(2세)	'25. 1. 16. 퇴소	$232,000 \times 13/23 =$ 131,130	100,870																																																							
F(2세)	'25. 1. 22. 입소	$232,000 \times 9/23 =$ 60,520	0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1세)	재원	377,000	0																																																							
B(1세)	재원	377,000	0																																																							
C(1세)	재원	377,000	0																																																							
D(1세)	'25. 1. 16. 퇴소	$377,000 \times 13/26 =$ 188,500	0																																																							
E(2세)	'25. 1. 16. 퇴소	$256,000 \times 13/26 =$ 128,000	128,000																																																							
F(2세)	'25. 1. 22. 입소	$256,000 \times 9/26 =$ 88,610	0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73	<p>⑦ (2~3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4명, 퇴소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th><th>재원상태</th><th>기관보육료</th><th>인센티브</th></tr> </thead> <tbody> <tr> <td>A(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B(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C(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D(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E(3세)</td><td>'25. 1. 16. 퇴소</td><td>0</td><td>232,000</td></tr> <tr> <td>F(2세)</td><td>'25. 1. 16. 퇴소</td><td>$232,000 \times 13/23$ $\times 131,130$</td><td>100,870</td></tr> <tr> <td>공석</td><td>공석</td><td>0</td><td>232,000</td></tr> </tbody> </table>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5. 1. 16. 퇴소	0	232,000	F(2세)	'25. 1. 16. 퇴소	$232,000 \times 13/23$ $\times 131,130$	100,870	공석	공석	0	232,000	<p>② (2~3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4명, 퇴소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th><th>재원상태</th><th>기관보육료</th><th>인센티브</th></tr> </thead> <tbody> <tr> <td>A(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B(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C(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D(3세)</td><td>재원</td><td>0</td><td>0</td></tr> <tr> <td>E(3세)</td><td>'26. 1. 16. 퇴소</td><td>0</td><td>256,000</td></tr> <tr> <td>F(2세)</td><td>'26. 1. 16. 퇴소</td><td>$256,000 \times 13/26 =$ <u>128,000</u></td><td><u>128,000</u></td></tr> <tr> <td>공석</td><td>공석</td><td>0</td><td>256,000</td></tr> </tbody> </table>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6. 1. 16. 퇴소	0	256,000	F(2세)	'26. 1. 16. 퇴소	$256,000 \times 13/26 =$ <u>128,000</u>	<u>128,000</u>	공석	공석	0	256,000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5. 1. 16. 퇴소	0	232,000																																																															
F(2세)	'25. 1. 16. 퇴소	$232,000 \times 13/23$ $\times 131,130$	100,870																																																															
공석	공석	0	232,000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6. 1. 16. 퇴소	0	256,000																																																															
F(2세)	'26. 1. 16. 퇴소	$256,000 \times 13/26 =$ <u>128,000</u>	<u>128,000</u>																																																															
공석	공석	0	256,000																																																															
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374	<table border="1"> <thead> <tr> <th>반구분</th><th>정원 기준</th><th>지원반</th><th>지원 인원</th></tr> </thead> <tbody> <tr> <td>0세반</td><td>3명</td><td>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td><td>1명</td></tr> <tr> <td>0~1세반</td><td>3명</td><td>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td><td>1명</td></tr> <tr> <td>1세반</td><td>5명</td><td>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td><td>1~2명</td></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body> </table>	반구분	정원 기준	지원반	지원 인원	0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0~1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1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반구분</th><th>정원 기준</th><th>지원반</th><th>지원 인원</th></tr> </thead> <tbody> <tr> <td>0세반</td><td>3명</td><td>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td><td>1명</td></tr> <tr> <td>0~1세반</td><td>3명</td><td>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td><td>1명</td></tr> <tr> <td>1세반</td><td>5명</td><td>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td><td>1~2명</td></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body> </table>	반구분	정원 기준	지원반	지원 인원	0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0~1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1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생략)																											
반구분	정원 기준	지원반	지원 인원																																																															
0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0~1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1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생략)																																																																		
반구분	정원 기준	지원반	지원 인원																																																															
0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0~1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1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생략)																																																																		
374	<p>○ 단,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인 경우, 0세반에 한해 최대 2개 반까지 인센티브 지원</p> <p>*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가 개정될 경우, 변경된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 시행 다음 해 1월 1일(지금은 2월부터 적용)</p> <p>* 금액 생성 및 소급 지원 시, 인센티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인구감소지역 기준 적용</p>	<p>○ 단,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인 경우, 0세반에 한해 최대 2개 반까지 인센티브 지원</p> <p>*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가 개정될 경우, 변경된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 시행 다음 해 1월 1일(지금은 2월부터 적용)</p> <p>* 금액 생성 및 소급 지원 시, 인센티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인구감소지역 기준 적용</p>																																																																
376	(신설)	<p>11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p> <p>* 세부 내용 본문 참조</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3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내 관리동아린이집 (의무어린이집 포함)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평균 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내 관리동아린이집 (의무어린이집 포함)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아린이집 장기임차 : 평균 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사람
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u>보육사업안내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u> 참조)
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형 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형 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u>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u> 지급 가능
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제외 대상자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제외 대상자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임교사
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u>보육사업안내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u> 참조)
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u>28만원</u>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u>14만원</u>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u>14만원</u> 지급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교사겸임원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임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410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교사겸임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411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임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411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교사겸임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412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교사겸임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412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우선 순위</th> <th>지원 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상시</td> <td>4</td> <td>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td> </tr> </tbody> </table>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상시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우선 순위</th> <th>지원 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상시</td> <td>4</td> <td>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td> </tr> </tbody> </table>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상시	4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상시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상시	4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413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우선 순위</th> <th>지원 사유</th> <th>지원 일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긴급</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모성보호</td> <td>(생략)</td> <td>(생략)</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수시 신청</td> </tr> <tr> <td>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td> <td>5일 최대 10일</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일·가정 양립</td> <td>배우자 출산휴가</td> <td>1일 최대5일</td> <td></td> </tr> </tbody> </table> <p>***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p>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긴급	모성보호	(생략)	(생략)	수시 신청	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생략)	(생략)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우선 순위</th> <th>지원 사유</th> <th>지원 일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긴급</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모성보호</td> <td>(생략)</td> <td>(생략)</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수시 신청</td> </tr> <tr> <td>유산 (~15주(10일))</td> <td>5일 최대 10일</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일·가정 양립</td> <td>배우자 출산휴가</td> <td>최대 20일</td> <td></td> </tr> </tbody> </table> <p>***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p>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긴급	모성보호	(생략)	(생략)	수시 신청	유산 (~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생략)	(생략)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긴급	모성보호	(생략)	(생략)	수시 신청																																		
		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생략)	(생략)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긴급	모성보호	(생략)	(생략)	수시 신청																																		
		유산 (~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생략)	(생략)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413	<p>라. 지원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p>라. 지원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1일~10일)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월 2,473천원, '25년 1월부터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부 지원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인 건 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23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략)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23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월 2,560천원, '26년 1월부터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부 지원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인 건 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97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략)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97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략)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23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략)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97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생략)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 아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 아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415	<p>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일 96,500원(8시간 기준) 	<p>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일 99,880원(8시간 기준)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월 2,363천원(국공립 1호봉 수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 비당임교사가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담임교사 대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역할 수행 등) 「보육사업안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기준을 준용함(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예산 활용) - 담임교사 업무 수행 시간 일 8시간 월 15일 이상 : 월 26만원 일 4시간 월 15일 이상 : 월 13만원 ※ 비당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자격, 3년 이상 경력) 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395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월 2,446천원(국공립 1호봉 수준 +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 비당임교사가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담임교사 대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역할 수행 등) 「보육사업안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기준을 준용함(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예산 활용) - 담임교사 업무 수행 시간 일 8시간 월 15일 이상 : 월 28만원 일 4시간 월 15일 이상 : 월 14만원 ※ 비당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자격, 3년 이상 경력) 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456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부담)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25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10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26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139천원* 지원 								
420	<p>라. 사업기간: '25년 3월 ~ '26년 2월</p>	<p>라. 사업기간: ~ 2027년 2월</p>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예시) 25. 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6년, '27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p>—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예시) 25. 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6년, '27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p>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423	<p>마. 지원 단가</p> <p>○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100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24.1월~)</p>	<p>마. 지원 단가</p> <p>○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u>1,139천원</u>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u>140천원</u> 지원 ('26.1월~)</p>
423	<p>사. 사업기간</p> <p>○ 2025년 3월 ~ 2026년 2월</p>	<p>사. 사업기간</p> <p>○ ~ <u>2027년 2월</u></p>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438	<p>3) 설치비 지원기준</p> <p>○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은 국비 20% 지원)</p> <p>- 2025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m²</p>	<p>3) 설치비 지원기준(국비 지원 사업 선정 시)</p> <p>○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은 국비 20% 지원)</p> <p>- <u>2026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707천원/m²</u></p>
442	<p>○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p> <p>- (생략)</p> <p>- (신설)</p>	<p>○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p> <p>- (생략)</p> <p>-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 센터 미설치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p>
436, 454~458	<p>*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표현 전반 수정</p>	<p>* 본문 참조</p>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부록〉		
부록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계약학과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만 입학 가능
부록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2,300원('24년 표준보육비용) * 2,5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3,700원('24년 표준보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u>2,200원('22년 표준보육비용)</u> * 2,5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u>3,500원('22년 표준보육비용)</u>
부록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 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인아보육료: 616천원('25.7.1.~) • 장애아보육료: 인간비지원시설 616천원('25.7.1.~), 인간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08천원 ('2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 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인아보육료: 634천원 • 장애아보육료: 인간비지원시설 634천원, 인간비 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u>317천원</u>
부록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6세이('18. 1. 1.~'18. 12. 31. 출생) 초등 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 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25. 1. 2.~3. 1. 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22. 1. 2.~3. 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22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 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6세이('19. 1. 1.~'19. 12. 31. 출생) 초등 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 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26. 1. 2.~3. 1. 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23. 1. 2.~3. 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u>'23년생이 상위반으로</u>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 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부록 92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4.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3. 01. 01. ~ '23.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2. 01. 01. ~ '22. 12. 31.</td> </tr> <tr> <td>3세반</td> <td>'21. 01. 01. ~ '21. 12. 31.</td> </tr> <tr> <td>4세반</td> <td>'20. 01. 01. ~ '20.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td> </tr> <tr> <td>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td> <td>'18. 01. 01. ~ '12. 12. 31.</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3. 12. 31.	2세반	'22. 01. 01. ~ '22. 12. 31.	3세반	'21. 01. 01. ~ '21. 12. 31.	4세반	'20. 01. 01. ~ '20. 12. 31.	5세반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8. 01. 01. ~ '12. 12. 31.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5.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4. 01. 01. ~ '24. 12. 31.</td> </tr> <tr> <td>2세반</td> <td>'23. 01. 01. ~ '23. 12. 31.</td> </tr> <tr> <td>3세반</td> <td>'22. 01. 01. ~ '22. 12. 31.</td> </tr> <tr> <td>4세반</td> <td>'21. 01. 01. ~ '21. 12. 31.</td> </tr> <tr> <td>5세반</td> <td>'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19. 12. 31.)</td> </tr> <tr> <td>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td> <td>'19. 01. 01. ~ '13. 12. 31.</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5.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4. 01. 01. ~ '24. 12. 31.	2세반	'23. 01. 01. ~ '23. 12. 31.	3세반	'22. 01. 01. ~ '22. 12. 31.	4세반	'21. 01. 01. ~ '21. 12. 31.	5세반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19.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9. 01. 01. ~ '13.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3. 12. 31.																																	
2세반	'22. 01. 01. ~ '22. 12. 31.																																	
3세반	'21. 01. 01. ~ '21. 12. 31.																																	
4세반	'20. 01. 01. ~ '20. 12. 31.																																	
5세반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18.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8. 01. 01. ~ '12.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5.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4. 01. 01. ~ '24. 12. 31.																																	
2세반	'23. 01. 01. ~ '23. 12. 31.																																	
3세반	'22. 01. 01. ~ '22. 12. 31.																																	
4세반	'21. 01. 01. ~ '21. 12. 31.																																	
5세반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19.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9. 01. 01. ~ '13. 12. 31.																																	
부록 92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령 (적용시기)</th> <th>정부지원단가(월)</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 ('25.7.1~)</td> <td>567,000</td> </tr> <tr> <td>1세반 ('25.7.1~)</td> <td>500,000</td> </tr> <tr> <td>2세반 ('25.7.1~)</td> <td>414,000</td> </tr> <tr> <td>3~5세반 ('25.1.1~2.29.)</td> <td>280,000</td> </tr> <tr> <td>3~5세반 ('25.3.1~)</td> <td>280,000</td> </tr> </tbody> </table>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0세반 ('25.7.1~)	567,000	1세반 ('25.7.1~)	500,000	2세반 ('25.7.1~)	414,000	3~5세반 ('25.1.1~2.29.)	280,000	3~5세반 ('25.3.1~)	280,000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육료 지원 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령 (적용시기)</th> <th>정부지원단가(월)</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 ('26.1.1~)</td> <td>584,000</td> </tr> <tr> <td>1세반 ('26.1.1~)</td> <td>515,000</td> </tr> <tr> <td>2세반 ('26.1.1~)</td> <td>426,000</td> </tr> <tr> <td>3~5세반 ('26.1.1~2.28.)</td> <td>280,000</td> </tr> <tr> <td>3~5세반 ('26.3.1~)</td> <td>280,000</td> </tr> </tbody> </table>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0세반 ('26.1.1~)	584,000	1세반 ('26.1.1~)	515,000	2세반 ('26.1.1~)	426,000	3~5세반 ('26.1.1~2.28.)	280,000	3~5세반 ('26.3.1~)	280,000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0세반 ('25.7.1~)	567,000																																	
1세반 ('25.7.1~)	500,000																																	
2세반 ('25.7.1~)	414,000																																	
3~5세반 ('25.1.1~2.29.)	280,000																																	
3~5세반 ('25.3.1~)	280,000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0세반 ('26.1.1~)	584,000																																	
1세반 ('26.1.1~)	515,000																																	
2세반 ('26.1.1~)	426,000																																	
3~5세반 ('26.1.1~2.28.)	280,000																																	
3~5세반 ('26.3.1~)	280,000																																	
부록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 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부록 98	<p>다) 장애아 보육료</p> <p>○ (지원대상) 12세 이하('12. 1. 1. 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p>	<p>다) 장애아 보육료</p> <p>○ (지원대상) 12세 이하('13. 1. 1. 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p>																																
부록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616천원(방과후 장애 아동: 30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634천원(방과후 장애 아동: 317천원)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부록 99	<p>라) 다문화 보육료</p> <p>○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의 5세(‘19. 1. 1. 이후 출생) 이하 아동</p>	<p>라) 다문화 보육료</p> <p>○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의 5세(‘20. 1. 1. 이후 출생) 이하 아동</p>																																						
부록100	<p>마) 방과후 보육료</p> <p>○ (지원대상) 12세(‘12. 1. 1. 이후 출생) 이하 초등 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p>	<p>마) 방과후 보육료</p> <p>○ (지원대상) 12세(‘13. 1. 1. 이후 출생) 이하 초등 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p>																																						
부록13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1.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7.4.>																																						
부록153	<p>■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각종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p> <p>*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 여부 명시</p>	<p>■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각종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p> <p>*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 여부 명시</p>																																						
부록206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부록 247	<table border="1"> <thead> <tr> <th>식재료</th> <th>구분</th> <th>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th> <th>관련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농산물</td> <td rowspan="2">일반사항</td> <td colspan="2">(생략)</td> </tr> <tr> <td>우수관리 인증 농산물</td> <td>「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td> </tr> <tr> <td colspan="2">(생략)</td> </tr> <tr> <td>쌀</td> <td>수학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td> <td></td> </tr> <tr> <td colspan="4">(생략)</td> </tr> </tbody> </table>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농산물	일반사항	(생략)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략)		쌀	수학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식재료</th> <th>구분</th> <th>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th> <th>관련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농산물</td> <td rowspan="2">일반사항</td> <td colspan="2">(생략)</td> </tr> <tr> <td>우수관리 인증 농산물</td> <td>「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td> </tr> <tr> <td colspan="2">(생략)</td> </tr> <tr> <td>쌀</td> <td>수학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td> <td></td> </tr> <tr> <td colspan="4">(생략)</td> </tr> </tbody> </table>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농산물	일반사항	(생략)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생략)		쌀	수학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생략)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농산물	일반사항	(생략)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략)																																							
쌀	수학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생략)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농산물	일반사항	(생략)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생략)																																							
쌀	수학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생략)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식재료	구분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관련법령
부록 247	축산물	일반사항	(신설)		일반사항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생략)					
		이력추적관리축산물(소고기 및 돼지고기에 한함)			일반사항	이력추적관리축산물(소고기 및 돼지고기애한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 관리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 관리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4조제1항	
			(생략)			(생략)		
부록 248	수산물	일반사항	(생략)		일반사항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관리된 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1항	
			적합한 조건(냉장 및 냉동, 상온)으로 유통관리된 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1항				
			(생략)			(생략)		
부록 248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자료마당 참고				* 어린이 급식관리 지침서 등 관련 자료 참고			
부록 335	(상위연령반) 전년도 1.1 ~ 전년도 12.31 사이 출생자와 함께 반편성 희망 ※ 이후 보호자 신청으로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신학기 또는 전원시까지 상위연령반 재신청불가				(상위연령반) 전년도 1.1 ~ 전년도 12.31 사이 출생자와 함께 반편성 희망 ※ 이후 보호자 신청으로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신학기 또는 전원시까지 상위연령반 재신청불가 ※ 주의사항 :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는 경우 누리과정 비용 지원기간(36개월)이 초과 될 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한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25년 하반기 페이지 기준)	2025년 하반기	2026년
부록 335	※ '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연령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 '2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연령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부록 356	-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 기관지정 의료 기관()이나 □ 보호자지정 의료기관()으로 수송해주십시오.	-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 기관지정 의료 기관()이나 □ 보호자지정 의료기관()으로 수송해주십시오. ※ 「 <u>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u> 」 등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90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 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 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부록 420~ 423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 신청서	시간제보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제보육 사업 안내」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해당 서식 삭제